

(2023학년도 제12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시: 2023. 9. 21.(목), 14:00 ~
- 장소: 혁신지원팀 회의실(문화관 3층, 301호)
- 심의 안건

1. 「인권센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인권센터)
2. 「체육특기자규정」 개정에 관한 건(체육부)
3. 「체육부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체육부)
4.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건(체육부)
5. 「평생교육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평생교육원)
6. 「사이버평생교육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사이버평생교육원)
7.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에 관한 건(학사관리팀)
8. 「시험및성적에관한규정」 개정에 관한 건(학사관리팀)
9. 「교무위원회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교원인사팀)
10. 「구성원 참여·소통지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기획예산팀)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인권센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인권센터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인권센터장의 부교수 위촉 제한에서 폭 넓은 교원 중에서 인권센터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센터장의 직급을 조교수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인권센터 규정 제5조(센터장) 센터장의 직급을 “부교수 이상” 에서 “조교수 이상” 으로 변경하고자 함		
기대효과	• 폭 넓은 인적 자원풀에서 센터장 추천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인권센터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안) 1부		

「인권센터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안)
제5조(센터장) ①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총장의 추천으로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총장의 추천으로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평생교육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평생교육원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을 위해 위원수 확대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1조(운영위원회) 제2항 - 위원 수 ‘5인 이상 15인 이하’ 를 ‘15명 내외’ 로 개정		
기대효과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운영위원을 통한 교육원 홍보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평생교육원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평생교육원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1조(운영위원회) ①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인 이상 15인 이하</u>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5명 내외</u>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신설)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사이버평생교육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사이버평생교육원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수 확대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2조(운영위원회) 제2항 - 위원 수 ‘5인 이상 7인 이하’ 를 ‘15명 내외’ 로 개정			
기대효과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운영위원을 통한 교육원 홍보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사이버평생교육원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사이버평생교육원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인 이상 7인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5명 내외</u>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신설)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체육특기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체육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학사관리팀, 학생복지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완료 및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본교 육성종목(축구, 배구(여), 태권도, 사격) 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 선수, 학부모들은 특기자로서의 장학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 제4조(특기자로의 전환) 및 제10조(장학금지급 및 제한 등)에는 최초 장학금 지급 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본교 육성종목에 등록한 특기자전형 입학자에 한해 경기실 적 유무와 관계없이 장학금지급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2023.8.2.)		
개정(안) 주요내용	• 제4조(특기자로의 전환) - 특기자로의 전환 및 유지로 조 제목 개정 - 특기자 유지에 관한 항 신설 • 제10조(장학금지급 및 제한 등) - 제한사항의 경기실적 및 학업 성적에 대한 내용 분리 - 특기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예외 사항 신설		
기대효과	• 특기자 운영의 효율성 향상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체육부 특기자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체육특기자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특기자로의 전환) ① 육성종목으로 입학한 비특기자 학생선수의 특기자 전환평가는 매학기 한다. ②특기자 전환은 학과성적 70점 이상이고, 경기실적을 보유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2항에 따른 경기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경기실적 적용 시기는 대회 출전 후 다음 학기에 한한다. 1.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해당대회에 출전한 경우 2. 학교 또는 지역(도)대표로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 3. 정부 및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나 본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 4. 구기 종목은 단체 8강 또는 리그 출전 시간범위 50%이상 출전한 경우 ④특기자 전환은 운영위원회와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항 신설)</u>	제4조(특기자로의 전환 및 유지) ①육성종목으로 입학한 비특기자 학생선수의 특기자 전환평가는 매학기 한다. ②특기자 전환은 학과성적 70점 이상이고, 경기실적을 보유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2항에 따른 경기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경기실적 적용 시기는 대회 출전 후 다음 학기에 한한다. 1.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해당대회에 출전한 경우 2. 학교 또는 지역(도)대표로 국제대회(5개국 이상 참가)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 3. 정부 및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나 본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 4. 구기 종목은 단체 8강 또는 리그 출전 시간범위 50%이상 출전한 경우 ④특기자 전환은 운영위원회와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⑤매 학년도 특기자전형으로 신입학한 특기자에 한하여 1년간 특기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u>
제10조(장학금지급 및 제한 등) ①학생선수는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학생선수에게 매학기 평가를 통해 등록금 및 생활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공상으로 인해 훈련, 연습경기, 대회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한 학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장학금 지급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 태만 및 지도 불응의 경우 2. 학교 및 생활관 생활이 불성실한 경우 3. 지도자의 승인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4. 지도자의 승인 없이 소속팀을 이탈한 경우 5. 훈련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u>6. 해당 경기 실적이 없거나 학업 성적이 70점/100점 미만인 경우 (호 분리)</u> <u>7.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u> <u>8.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u> <u>9. 기타 학생선수로서의 본분을 위배한 경우</u>	제10조(장학금지급 및 제한 등) ①학생선수는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학생선수에게 매학기 평가를 통해 등록금 및 생활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공상으로 인해 훈련, 연습경기, 대회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한 학기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장학금 지급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 태만 및 지도 불응의 경우 2. 학교 및 생활관 생활이 불성실한 경우 3. 지도자의 승인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4. 지도자의 승인 없이 소속팀을 이탈한 경우 5. 훈련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u>6. 해당 경기 실적이 없는 경우</u> <u>7. 학업 성적이 70점/100점 미만인 경우</u> <u>8.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u> <u>9.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u> <u>10. 기타 학생선수로서의 본분을 위배한 경우</u>

현 행	개 정(안)
(항 신설)	⑤다만, 동조제4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특기자는 해당 경기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체육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완료 및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체육특기자로의 유지에 관한 내용 부재로 신설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결과(2023.8.2.)			
개정(안) 주요내용	• 제3조(기능) 제4호: 특기자로의 유지에 관한 내용 신설 - 4. 특기자로의 전환 <u>및 유지</u> 심사에 관한 사항			
기대효과	• 특기자 운영의 효율성 향상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체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규정 또는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육성종목 선정 및 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4. 특기자로의 전환 <u>(문구 신설)</u> 심사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종목별 총감독, 감독 선임에 관한 사항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체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에 관한 규정 또는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육성종목 선정 및 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4. 특기자로의 전환 <u>및 유지</u> 심사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종목별 총감독, 감독 선임에 관한 사항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신설)</u>	<u>부 칙</u>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체육부운영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체육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학사관리팀, 학생복지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완료 및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체육특기자로의 유지에 관한 내용 부재로 신설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결과(2023.8.2.)		
개정(안) 주요내용	•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3호 심의 및 추천대상자의 유지자 신설 - 3. 육성종목 특기자로의 전환자와 유지자 심의 및 추천		
기대효과	• 특기자 운영의 효율성 향상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체육부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부 발전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육성종목 특기자 선정 및 인원 추천 3. 육성종목 특기자로의 전환자 <u>(문구 신설)</u> 심의 및 추천 4. 장학금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체육부의 예산 편성 및 결산 6. 지도자 및 선수의 포상 및 징계 7. <삭제 2020.2.19.> 8. <삭제 2020.2.19.> 9. 기타 체육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부 발전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육성종목 특기자 선정 및 인원 추천 3. 육성종목 특기자로의 전환자<u>와 유지자</u> 심의 및 추천 4. 장학금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체육부의 예산 편성 및 결산 6. 지도자 및 선수의 포상 및 징계 7. <삭제 2020.2.19.> 8. <삭제 2020.2.19.> 9. 기타 체육부 운영에 관한 사항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시험 결시에 따른 성적 평가 0점 처리는 일반학생 및 평생교육지원대상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감을 주고, 국가장학금 신청에 제약을 주어 학교 중도탈락률을 높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2조(성적 평가기준) 제2항 - ‘정기시험 결시자’ 문구 삭제			
기대효과	• 평생교육지원대상자등 대면시험이 곤란한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 및 중도이탈 방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진행예정	
	다. 의견제출 유무		반영예정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예정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3조(성적 평가기준)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 및 수업태도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각 교과목의 출석이 총 수업시간 3분의 2에 미달자, <u>정기시험 결시자 및</u> 부정행위자의 성적 평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제43조(성적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각 교과목의 출석이 총 수업시간 3분의 2에 미달자 <u>및</u> 정기시험 부정행위자의 성적 평가는 0점으로 처리한다.
<u>(신 설)</u>	<u>부 칙</u> <u>이 개정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시험및성적에관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시험및성적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시험방법) ①시험방법은 필답에 의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실기, 구술 <u>또는 논문으로 대체</u>할 수 있다. ②원격수업 교과목의 시험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조(시험방법) ①시험방법은 필답에 의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실기, 구술, <u>과제물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서 실시</u>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파견학생의 성적, <u>(문구 신설) P/F</u> 등으로 표기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u>한다</u>. ②상대평가 비율은 100~90점은 30% 이내, 100~80점은 70% 이내, 80점 미만은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교직, 순수 실험·실습·실기, 영어강의, 군사학 교과목 : 90점 미만 70% 이상 -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교과목 : 90점 이상 50% 이내 ③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교과목 특성상<문구 삭제></u>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파견학생의 성적, <u>외부 기관 개설교과목, 미래융합대학 교과목, 국고지원 사업</u>, P/F 등으로 표기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u>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무위원회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입안형태	☐ 제 정		

「교무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처 <u>교원인사</u> 팀장이 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처 <u>학사관리</u> 팀장이 된다.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 4 장 교 무 처	제 4 장 교 무 처
제9조(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7. 생략 8. 교수회의, <u>교무위원회회의, 학처장회의 및 학과장 간담회</u> , 교직원 워크숍에 관한 업무 9. ~16 생략	제9조(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7. 생략 8. 교수회의, 교직원 워크숍에 관한 업무 9. ~16 생략
제9조2(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25. 생략 <u>(호 신설)</u> <u>26.</u>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u>27.</u> 각종 위원회에 관한 업무 <u>28.</u>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제9조2(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25. 생략 <u>26. 교무위원회회의, 학처장회의 및 학과장 간담회 등에 관한 업무</u> <u>27.</u>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u>28.</u> 각종 위원회에 관한 업무 <u>29.</u>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처장	팀장
8. 교수회의, <u>교무위원회</u> , <u>학처장회의</u> , <u>학과(부)장 회의</u> , 교직원 워크숍 등	계획안 수립		○		8. 교수회의, 교직원 워크숍 등	계획안 수립		○	
	운영			○		운영			○
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처장	팀장				처장	팀장
(신설)	(신설)	(신설)			28. <u>교무위원회</u> , <u>학처장 회의</u> , <u>학과(부)장 회의</u> 등	<u>계획안 수립</u>	○		
	(신설)		(신설)			<u>운영</u>		○	
(신설)					부 칙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 지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예산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이해관계자’ 와 일치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개정(안) 주요내용	• 제7조 제3항 개정(안)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이해관계자’ 와 일치			
기대효과	• 규정의 명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 지원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소통 지원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구성원” 이라 함은 본교의 학생, 교직원을 말한다. ② “이해관계자” 라 함은 졸업생,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장이 된다. ③총장, 진천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노조위원장,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u>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총장, 진천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 노조위원장,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제2조 제2항의 이해관계자</u>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현행과 같음)
(신설)	<u>부칙</u> <u>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